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면세판매장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근거 신설>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74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전완희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1. 면세판매장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근거 신설 ····· 2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승수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4. 9. 19.
3. 회 부 일 : 2024. 9. 20.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 구입 후 3개월이내에 반출시에는 물품구입시에 부담한 세금을 환급하는 사후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국세청의 면세판매장 정보는 다른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제공이 불가능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면세판매장 및 사후환급제도 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개선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에 관한 상호, 사업장 소재지,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개선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3 신설).

Ⅲ. 검토의견

1. 면세판매장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즉시환급 가능 여부, 지정일 및 지정취소일 등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개선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13(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상호 2. 사업장의 소재지, 주된 업태 및 종목 3. 즉시환급 가능 여부 4. 지정일 및 지정취소일

나. 검토의견

우리나라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 구입 후 '3개월 이내' 반출할 경우 물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사후환급제도'를 198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1)]

환급방식은 '일반환급(출국장환급)', '도심환급', '즉시환급'으로 구분됨. 이 중 '즉시환급'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외국인 관광객이 체류기간 내 1인 최대 500만원 한도(건별 100만원 미만)에서 구입시, 물품을 구입하는 해당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즉시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즉시환급' 제도는 '일반환급', '도심환급' 방식과 다르게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사업자에게 서류 제출 및 환급', '출국시 반출확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음. 즉 외국인관광객이 여권만 제시하면 세전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 입장에서 쇼핑 편의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

1) <사후환급제도 개요>

- 대상: 외국인관광객(「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로서, 국내 주재 외교관이나 미군 등은 제외)
- 환급대상: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포함 1회 거래가액이 1.5만원 이상인 물품
  ※문화재, 중독성·습관성 의약품, 총포도검, 화약류 등은 제외
- 환급장식: 일반환급(출국장환급), 도심환급, 즉시환급

[표] 면세판매장 사후환급제도 방식별 구분

구분	면세절차	면세성격	기존 면세한도	개정 면세한도 ('24.1.1.~)
즉시 환급	**물품구매(세전가격)** (면세판매장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여권 정보, 물품 내역을 관세청으로 전송하여 승인받음)	실질적 사전면세	건당 3~50만원 미만, 총 1인 최대 250만원 이하	건당 1.5~100만원 미만, 총 1인 최대 500만원 이하
도심 환급	**물품구매(세후가격)** → 환급사업자에게 환급액 수령 → 출국 심사시 반출확인(세관장)	일반 사후면세	건당 3~500만원 이하	건당 1.5~600만원 이하
일반 환급 (출국장 환급)	**물품구매(세후가격)**→ 출국 심사시 반출확인(세관장)→환급사업자에게 환급액 수령		건당 3만원~	건당 1.5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특히, 2024년 1월 1일부터 면세한도를 개정, 건당 3만원이었던 최소한도를 1만 5천원으로 낮추면서, 즉시환급 방식의 경우 최대한도를 2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건당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였는바, '즉시환급 제도' 편의 개선을 통해 '쇼핑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임.

또한, 면세판매장도 2023년말 기준 19,934개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0,340개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음.

[표] 연도별 면세판매장 현황

(단위: 개,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판매장수	17,793	19,150	20,340	19,187	18,301	18,436	19,934
증가비(%)	11.3	7.6	6.2	△5.7	△4.6	0.7	8.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외국인관광객 입장에서는 방한 시 면세판매장, 면세판매장 중에서도 즉시환급이 가능한 매장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면세판매장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과 즉시환급 가능 여부는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타인에게 제공이 불가능함.[2)]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 상호, 사업장 소재지, 주된 업태 및 종목, 지정일 및 지정취소일,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면세판매장 등 정보를 확대하여 쇼핑 편의를 개선하고, 현재 추진 중인 '즉시환급 제도 활성화' 정책 수립[3)]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서 조세의 부과·징수

---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관련 사업 추진현황

연도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2년	200	한국관광공사	• 전국 사후면세점 DB 현행화 위한 실태조사
'23년	550	한국관광공사	• 전국 사후면세점 DB 현행화 및 표준화 • 사후면세제도 홍보
'24년	400	한국관광공사	• 민관협업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확대 • 사후면세제도 홍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외에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 등에 비추어, ‘면세판매장’ 활성화 및 즉시 환급 가능 면세판매장 정보 구축 등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도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임.

[표] 과세정보 제공요구 근거를 규정한 입법례

법령	조 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휴업일 및 폐업일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휴업일 및 폐업일

법령	조 항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개업일, 휴업일 및 폐업일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 1)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자본금 2)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 해당 연도에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다만, 제공요구하는 과세정보 중 안 제48조의13제2호에 따른 '주된 업태 및 종목'[4]에서 '주된'이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시행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이 없어 모호하므로,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업태 및 종목'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5]

한편, 유사 입법례에서는 과세정보로서 '개업일·폐업일'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과세정보로서 '지정일·지정취소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4) 사업의 종류로서 사업자등록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선택하는 대분류를 '업태', 소분류를 '종목'이라고 함. 예) G. 도매 및 소매업, 4713. 면세점

5) '업태와 종목'이 법률에서 규정된 사례는 없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사례는 있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이는 면세판매장은 ‘개업일’과 면세판매장 ‘지정일’, ‘폐업일’과 면세판매장 ‘지정취소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것으로 보임[6].

문 의 처
02)6788-5377

6) 예를 들면, 소매업으로 개업한 이후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음.